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85호(2013.09.05.)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78호(2019.11.21)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영등포구 문래동2가 35번지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2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영등포구 문래동2가 35번지

나. 시행면적 : 15,669.1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명 칭 :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나. 주된사무소의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2가 35번지, 단지 내 조합사무실

다. 대표자 성명 : 강성석

라. 대표자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2가 35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5년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1.07.23.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구분	세 부 내 역		
	필지수	면적	권리자수
토지	1	13,956.30㎡	385인
	동수	연면적	권리자수
건축물	2	32,279.81㎡	385인

7.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가. 구역면적 : 15,669.10㎡(대지면적 : 13,956.30㎡)

나. 건 폐 율 : 21.14%

다. 용 적 률 : 299.15%

라. 높 이 : 79.9m

마. 연 면 적 : 66,161.19㎡

바.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구분	형별	전용면적(㎡)	세대수			유형	구성비
			조합/분양	임대	소계		
전용면적 60㎡ 미만	39	39.78	23	22	45	조합/분양 /임대	67.83%
	48	48.36	78	30	108		
	59A	59.75	72	—	72		
	59B	59.33	106	—	106		
전용면적 60 ~ 85㎡ 미만	76A	76.67	88	—	88	조합/분양	32.17%
	76B	76.87	69	—	69		
전용면적 85㎡ 초과	—	—	—	—	—	—	—
계			436	52	488	100%	

9.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내용
소공원	1,281.7	남성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기부채납
공공공지	431.1	남성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기부채납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제처리사항

가.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나.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다.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라.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마.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바.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아.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자. 기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의제 처리 됨

※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주택과(☎2670-366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